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2

발의연월일: 2024 6. 14

발 의 자:이병진・이재관・이연희

송옥주·임호선·윤후덕

이원택 • 한민수 • 문금주

복기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검역에 관한 조항을 두어 식물검역 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난 3월 한 국내 업체가 국내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수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(LMO: Living Modified Organism)인 주키니종자를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서 검역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 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제3 호의2 및 제48조의2제1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3부터 제3호의5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

제48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(고의로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)

제5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5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

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48조(벌칙)	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			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				
의 벌금에 처한다.	<u>.</u>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
<u> <신 설></u>	3의2. 제12조제9항에 따른 신고			
	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			
	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검역을			
	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			
	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			
	<u>받은 자</u>			
<u> 3의2.</u> ~ <u>3의4.</u> (생 략)	<u> 3의3.</u> ~ <u>3의5.</u> (현행 제3호의2			
	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)			
4. ~ 10. (생 략)	4. ~ 10. (현행과 같음)			
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	제48조의2(벌칙)	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				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			
<u><신 설></u>	1.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검			
	역을 받지 아니한 자(고의로			
	위반한 자는 제외한다)			
<u>1.·1의2.</u> (생 략)	<u>1의2.·1의3.</u> (현행 제1호 및			
	제1호의2와 같음)	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	
제50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	제5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			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의3. (생략)
- 4.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
 <삭 제>

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
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

 받은 자
- 5. (생략)
- ④ (생 략)

フレ	Ò	١
É	豆)

3	 	 	

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- 5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